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8. 11. 7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12월 7일

(제155회정기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부교육감 박창신)

가. 제안이유

-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916호) 과 동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25호) 이 98.10.16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삽입 (안 제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위거 계조직의 폐지로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 (안 제3조)
-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 (안 제4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조조정으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이 98.10.16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제정 목적에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삽입하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계조직의 폐지로 현행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